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83 발의연월일: 2022. 9. 16.

발 의 자:전용기·김수흥·김영배

김영진 • 김홍걸 • 민홍철

박광온 · 신정훈 · 윤재갑

이성만 · 최혜영 · 한병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"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,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%에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것"이라 밝힘. 또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 2022년 1분기 가계소비지출 중 교통 부문 지출은 전년동분기대비 2.8% 상승했고, 소득5분위별 소비지출 중 교통 부문에서 소득 1분위, 2분위 계층은 각각 3.8%, 79.8% 지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함.

원유가 상승을 비롯한 물가 급상승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지출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40%에서 90% 향상시켜 대중교통 부담을 경감시키고,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

함(안 제126조의2제2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6조의2제2항제2호 중 "40"을 "90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
에 대한 소득공제) ① (생 략)	에 대한 소득공제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	②
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	
합계액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	
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	
에는 제1호·제2호·제4호 및	
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)에서 제	
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	
의 금액(2021년 과세연도의 신	
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	
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더한	
금액으로 하되, 제10항에 따른	
금액을 한도로 한다. 이 경우 신	
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, 제2	
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	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	
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	
공제를 적용한다.	<u>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	2
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	
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	

에	해당	하는	금	백으	로서	제	1
항지	레1호	· 제2	호	및	제4	호	의
금이	백의	합계약	액(ㅇ	하	$\circ \rceil$	항	케
서	"대를	중교통	-0] {	ş분'	"이리	- Ğ	한
다)	× 1	00분의	의 <u>4</u>	<u>)</u> (20	20년	34	월
1일	부터	2020	년 7	7월	31일	까 >	지
사용	용한	대중	교통	이용	분의	7	경
우이	ll는	100분	의 8	30)			

3. ~ 7. (생 략)

③ ~ ⑩ (생 략)

<u>90</u>
3. ~ 7. (현행과 같음)
(3) ~ (10) (현행과 같음)